

준비서면

사건 2016재나35 기타(금전)

[담당재판부 : 제13민사부]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주)KT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위 당사자간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총9페이지

서 론

①.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때 변론에서 판사님이 징계사유에 대해 예기 했습니다. 징계사유에 기록된 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왜 이송신청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송신청 철회를 원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의 노동조합은 믿지 못합니다.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 행정법원에서 성남 민사법원으로 이송 될 때 민사법원에서도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조회 신청해 노동조합에서 거절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각하 판결 받아 이해 안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 진실을 밝히려면 행정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이송신청 하여 기각 당했으나 판결로서 이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 이송신청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 2012 기각,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때에도 ‘민사소송법 제 38조’의 언급은 없었고 여러 번의 판결문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주장 했습니다.

②. 참고.(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이사건 2013재나20007 9월4일 변론 때 큰 체격의 노조간부님이 오셨습니다.

변론 마치고 법정을 나온 후 (가까이 다가와서)

“왜 자꾸 소송합니까?”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인정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 등의 폭언을 하여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내용증명(2장첨부)

☞. 뒷면 첨부내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용

①. 그동안 판결(전심판결)의 위법 부당행위

(1).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즉,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경영자님들 반대에도 업무에 관철시켜 근로조건 개선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인정했습니다.

☞. 1997. 9 아침을 여는 소리(갑 제6호증)는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매

월 발행하는 노보입니다. 여기에 “전화번호 지정규정이 바뀌게 된 것은 임그루 조합원과 같은 숨은 일꾼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되어있습니다.

2. 단체협약(회사사규)에 조합원에게 허용규정을 필요시 쾌심 죄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 당시 업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무 할 수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취소신청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갑 제8-1, 8-2호증) 휴직사규에는 이런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갑 제9호증) 휴직하려고 해도 꾀병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규를 자세히 알려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로’ 책(갑 제10호증)을 내어 회사 망신시켰다고 왕따 시켰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갑 제11-1 ~ 3호증)

3. 징계사유 통보서(갑 제12호증)에 없는 내용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갑 제1호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갑 제9호증)을 보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조합원이 위의 사항으로 피해당한 것은 조합활동 피해자로 노동조합에서 보상해 주어야합니다.

②.진행했던 내용

○.처음에는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노동조합에 “신분보장기급 사용내역”을 알려고 사실조회신청서 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2007가합3175)으로 이송했습니다.

○.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 중단,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 대법원 2011다1743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498기각, 대법원 2012다1543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495기각, 대법원 2012다10835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20007각하, 대법원 2013다8092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30기각, 대법원 2014다6747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072각하, 대법원 2015다68584 상고이유서불제출기각. 불복하여 현재 이 사건입니다.

○. 고등법원 2010나73583 때에는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 2012 기각,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③. 맷음말

○. 2010나73583때 노동조합에 아래처럼 호소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 ‘대법원 2010두15087’ 두 사건은 그동안 여러 번의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묵살하여 판결했습니다. 높은 양심과 도덕심으로 이것을 인정하여 스스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갑 제10호증)을 보면, 저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감사한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 참고

그 때의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6두70” 진행 중이며 그 때의 ‘대법원 2010두15087 부당해고철회’ 사건은 “대법원 2016두70”과 연관이 있어 “대법원 2016두70” 진실을 밝혀 소송 할 예정입니다.

○. 대법원 2011다17434 때 아래처럼 주장했습니다.

이번이 최종 판결인데 행정법원으로 이송이 안 된다면, 이천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조합 활동 피해자라 인정하여 노조간부들에게 해주었던 대우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지금도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천만원 지급 판결 받아 위의 주장처럼 감사한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첨부

○. 위원장내용증명(2장)

2016. 2.

재심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 귀중

참고 : 제출된 증거

1심 때(성남지원 2009가합9702) 제출

- .갑 제1호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 .갑 제2호증 규약
- .갑 제3호증 신분보장규정
- .갑 제4호증 신분보장기금청구서 반려
- .갑 제5호증 내용증명서
- .갑 제6호증 1997. 9.노보 아침을 여는 소리
- .갑 제7호증 확인서

2심 때(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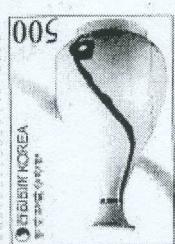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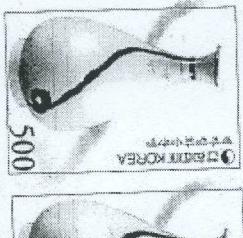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갑 제8-1. (재 심사결정서) 갑 제8-2호증
- .휴직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총7장
-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 갑 제10호증
- .교통사고 후유증 (의사 장애진단서) : 갑 제11-1호증, (그 당시 치료 받았던 의사 진단서) : 갑 제11-2 호증, (신체 감정서) : 갑 제11-3호증
-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호증
- .징계사유통보서 없는 해고이유(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3호증 총10장
- .다른 분들의 (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4호증 총52장
-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 갑 제15호증
- .협박확인서 : 갑 제16호증
-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 갑 제17호증 총1장

KT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자동 206

T E L : (031) 727-2820~46
F A X : (031) 727-2815

463-7111



연락처 010-2878-2177
이메일 596-3

전화번호 010-2878-2177

이메일 596-3

전화번호 010-2878-2177

이메일 596-3

귀하



2013/12/26

767-801

국

34546-0100-4592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KT노동조합

우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TEL 031)727-2834 FAX 031)727-4815

문서번호 정책 제 318 호

시행일자 2013 . 12 . 24 .(년)

경유

수신 임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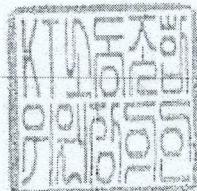
참조

제목 소 제기 중단 요청

- 관련: 성남2009가합9702, 서울고법2012재나495, 대법2012다108351, 서울고법2010나73583, 대법2011다17434, 서울고법2011재나498, 대법2012다15435, 서울고법2013재나20007, 대법2013다80924
- 귀하는 수 차례 위 관련의 소송들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본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증명 도달 이후에도 추가적인 소를 제기할 경우 위 관련의 모든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 우편물은 2013-12-26
제 3454601004592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남정부마을취급국장

KT노동조합 위원장



수신 - 임그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발신 -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우463-711
대표자 위원장 정윤모